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 >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26)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	2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5. 15.

다. 회부연월일 : 2025. 5.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예외사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데, 해당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5항 및 제48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고(안 제48조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신설).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사업의</u>

현행	개정안
<u><신설></u> ④ (생략)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u><신설></u>	<u>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u>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제48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⑦ ----- ----- -----제2항 또는 제6항 ----- ----- ----- ----- -----제48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평가하고----- ----- ----- 제48조의2(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8조제5

현행	개정안
	<u>항에 따른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 <u>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48조¹⁾는 국가기관등²⁾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³⁾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 일정한 사업금액 미만의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하면서(제4항),
- 다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⁴⁾, ②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⁵⁾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법 제4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한다)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4)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④ 현행법 제 40조에⁶⁾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⁷⁾인 대기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을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제3항).

- 이와 함께 국가기관등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제5항).

○ 이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공공SW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로, 이에 따른 기업규모별 참여가능 사업은 다음과 같음.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

<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에 따른 기업규모별 참여가능 사업 >

구 분		참여 가능한 공공SW 사업	기업 수 (‘23년)
중소기업	중소기업(연매출 800억원 이하)	모든 사업	18,227
대기업	초기중견기업(중소기업 졸업 후 5년 이내)	20억원 이상 사업	74
	중견기업(연매출 8천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사업	153
	중견기업(연매출 8천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사업	9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자산총액이 GDP의 0.5%(약10.4조원) 이상)	모든 사업 참여 금지 (단, 예외인정 받은 경우만 가능)	65

주: 국가안보 분야 및 신기술 분야 사업은 예외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예외사업 심의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

- 현재 심의위원회와 예외사업 해당 여부 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함)에 규정되어 있음⁸⁾.
- 개정안은 심의제도 운용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예외사업 대상 사업을 현행과 달리 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8) 참고자료 1 참조

- 다만, 안 제48조제5항에 따르면 예외사업 인정 여부의 결정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되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도한 재량권 문제는 개정 시에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제48조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업 심의 대상(제3항 및 제7항)에 현 제도상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고, 신기술 분야 사업에 대해서도 예외 심의의 근거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현행 제도는 현행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안보 등 관련 사업과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고시에서 정한⁹⁾ 신기술 분야 사업만 예외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외사업 심의 대상 비교 >

현 행	개정안
제48조제3항제2호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제48조제3항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9)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현 행	개정안
제48조제5항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48조제7항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6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제48조제4항에서의 예외심의 대상을 제3항제2호(국가안보 분야)로 한정하고 신기술 분야 사업의 예외 심의 근거는 현행처럼 개정안 제7항에 두어, 예외심의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입장임.

□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 개정안 제48조의2는 현행 고시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입법한 것임.

-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외사업의 인정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법률에 상향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매 심의마다 심의위원을 교체하는 인력풀제인 현행과 달리 심의위원이 고정(임기 2년)될 경우 위원의 신상 노출, 심의 방향의 편향 가능성 등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예외사업 심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되, 예외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 방법 및 절차, 심의 기준 등은 현행대로 고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개정안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현재 고시에 따라서 설치되는 위원회와 크게 상이하지 않고, 정책의 세부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행정수요 및 정책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령 이하를 근거로 설치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고시에 근거를 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고, 별도로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은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 참고자료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5조(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11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

③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업 인정여부의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
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천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제19조(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 ④ 생략